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05호 2016. 9. 12(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9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4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5호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안) 행정예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6호 공시송달 공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7호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 1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10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13호 등록 공인 공고	3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1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12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9. 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9-09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시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3-2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12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757-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2번길 7-6 (경서동)	2009-09-22	경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7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안길 20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1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9-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13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134번길 18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5-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707번길 13 (공촌동)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55-2, 154-5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12 (원창동, (주)외루니 식품 원창지점)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2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28-12 (원창동, 세화목재(주))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8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로6번길 51 (가좌동)	2009-07-06	가재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0-19, 150-23, 150-24, 150-25, 150-26, 150-27, 150-36, 150-110, 150-111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2 (가좌동, 엠파크 허브)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7-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29번길 14 (마전동, 검단1동 주민센터)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214-1, 942-16, 943-2, 943-4, 943-6, 943-7, 943-9, 943-10, 943-18, 943-19, 943-20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52 (당하동, 인천세무고등학교)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1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7-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31 (당하동)	2008-12-31	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28-8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22-10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6-134호

##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블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9. 1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II. 지구단위계획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변경 없음)
3. 도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일반상업용지(C-1)

가구번호	기정		비고	가구번호	변경		비고
	획 지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31	5	279.5		31	5	521.2	
	6	241.7					

- 상업시설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가구번호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5.6	획지합병	공동건축 권장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 없음)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7.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199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6. 9. 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고기간 : 2016. 9. 12. ~ 2016. 9. 27.(15일간)

공고내용

1. 행정처분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등록번호	57무6535 외 5대 (“붙임” 참조)		
	차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삼곡동 244) (☎ 032-560-4877, FAX 032-560-2794)		

### ※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등록된 자동차, 즉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불법 운행된 사유	등록일
1	57무6535	싼타페(SANTAFE)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9.05
2	인천83바9272	프런티어3000 l 홈로리	기타	2016.09.05
3	40가3023	렉스턴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9.05
4	66누1855	코란도C	기타	2016.09.02
5	51우7217	E250 CDI 4Matic	기타	2016.09.02
6	48구8282	NEW그랜저XG	개인간의 채무관계	2016.08.31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4호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3. 공고기간 : 2016. 9. 12. ~ 2016. 9. 26(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일 경우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경리팀(032-560-4154)

2016. 9.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연번	예치 건명	예치자	수납일자	반환일자	예치금액(원)	납입부서
1	3월 봉급공제금	재 활용선별원	2011-03-18	2011-04-18	400	자원순환과
2	4월 봉급공제금	청소행정팀	2011-04-20	2011-05-20	122,020	자원순환과
3	퇴직금 공제금	전○경	2011-05-06	2011-06-06	14,790	생활보장과
4	6월 봉급공제금	총무과	2011-06-20	2011-07-20	407,870	총무과
5	6월 봉급공제금(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김○금	2011-06-30	2011-07-30	5,340	재무과
6	6월기간제근로자 봉급공제금	장○별	2011-07-06	2011-08-06	8,870	여성보육과
7	7월 기타직 급여(보건행정과)	신○이	2011-07-19	2011-08-19	18,350	보건행정과
8	7월 봉급공제금(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홍○희외 2명	2011-07-20	2011-08-20	33,920	총무과
9	2월 봉급 정산분(고용보험, 세무과)	홍○숙	2011-07-28	2011-08-28	3,070	세무1과
			계		614,6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5호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2016. 9.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안) 행정예고

#### 1. 재배치 이유

- 가. 저출산 장기화 및 신도시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하여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가 위치한 구도심 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신도시 청라지구 및 서창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신설이 요구됨
- 나. 인천 관내 학생배치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학생배치시설의 적기확보 및 학생배치의 적정화 도모를 위해 2019년 3월 인천봉화초등학교를 청라지구로, 인천용정초등학교를 서창지구로 이전·재배치하고자 함
- 다. 인천봉화초등학교 및 인천용정초등학교를 학교신설 대체 이전·재배치함으로써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 및 교육재정 효율화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교 이전·재배치(안)

연번	학교명	현 위치	이전 예정지	비고
1	인천봉화초등학교	인천 서구 건지로 250번길 43	인천 서구 경서동 656-2일원	청라지구
2	인천용정초등학교	인천 남구 독정안길 26	인천 남동구 서창동 93-1답 일원	서창지구

나. 이전 예정일 : 2019. 03.

### 3. 공고기간 : 2016.09.08.(목) ~ 2016.09.30.(금)

###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은 **2016년 9월 30일 (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교육감(학교설립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우편(전자우편포함)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

- 팩스 : 032)402-8188

- 전자우편 : lsh78@ice.go.kr

라.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마. 동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적정규모팀

(☎420-8468,8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천봉화초등학교/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 전·후 위치도 각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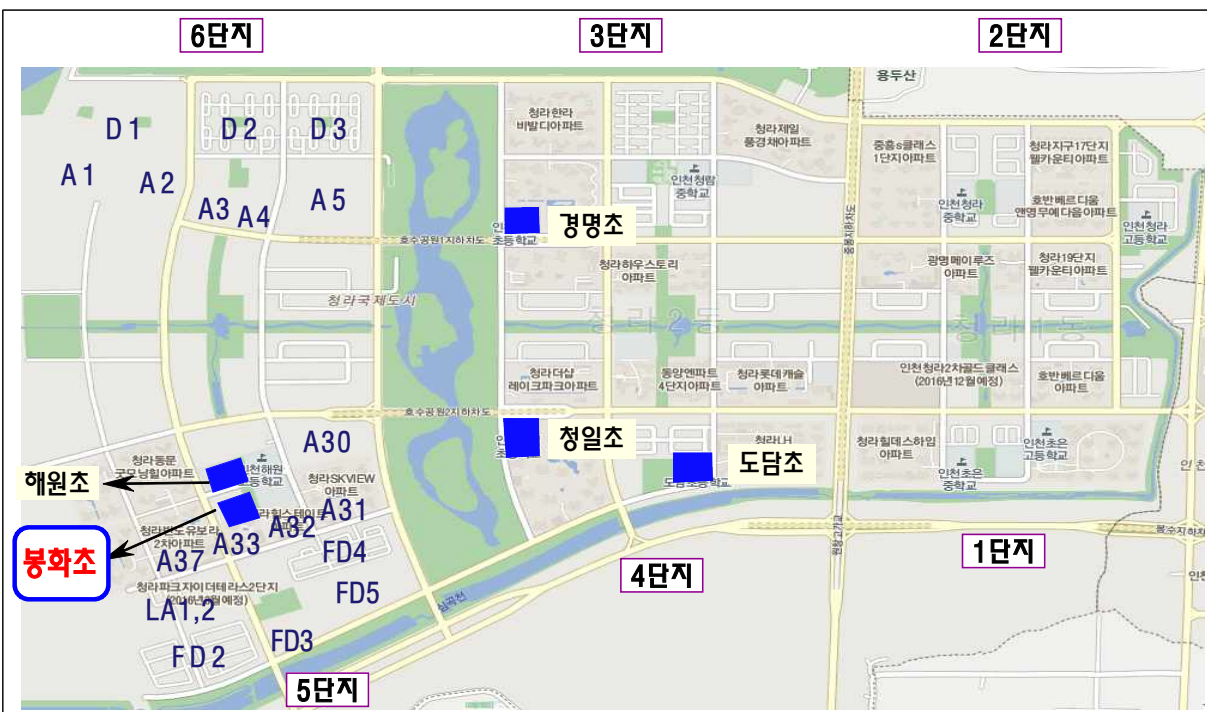
**【붙임】 학교 이전 전·후 위치도**

**1. 인천봉화초등학교**

● **현 위치**



● **이전·재배치 위치**



## 2. 인천용정초등학교

### ● 현 위치



### ● 이전·재배치 위치



[붙임]

## 의견제출서(인천봉화초등학교)

1. 행정예고 제목	인천봉화초등학교 이전재배치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의 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16년 월 일</p> <p>성명 :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 의견제출서(인천용정초등학교)

1. 행정예고 제목	인천용정초등학교 이전재배치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 의 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4. 기 타			
<p>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16년 월 일</p> <p>성명 :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p>			
비고	<p>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p>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 - 1206호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공고합니다.

2016. 9. 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 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 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내용	부과예정금액
1	정 * 미	검암동 677-3(503호) 베라체	다세대주택 (창고)	판넬 파이프	9.6.	불법증축	219천원

4. 공고기간 : 2016. 09. 12. ~ 2016. 09. 27.

5.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 6. 안내사항

가.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하오니 **2016.09.30일까지** 시정하시기 바라오며 .

나.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032-560-4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7호

##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의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해당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결정(안) 조서 >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	-	증)64,600	64,600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도로 : 변경없음
  - 이미 정비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되 교통편의 및 안전을 위한 포장 등 재정비만 실시
- 주차장시설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	8~9	국지도로	347	소2-21	소2-1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1	8~9	국지도로	345	소2-21	소2-1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8	8~9	국지도로	231	소2-13	소2-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62	중1-53	소2-9	일반도로	-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현동 133-1	346.0	-	346.0	-	-

###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으로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서구 신현동 133-3, 133-10, 133-11	609	주민공동체 활성화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및 제4호 제1·2종 근린 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골프연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및 도서관</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노유자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업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li> <li>- 금융업소 및 사무소</li> </ul> </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li>◦ 『학교보건법』에 따라 금지된 시설</li> </ul>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최고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에 따름</li> <li>◦ 회화나무주변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름</li> </ul>

※ 허용용도별 상세조건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름

※ 신현동 회화나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기타사항은 첨부3을 참조

### 6.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 : 정비계획 수립(안) 참조

※ 관계도서 공람장소 비치

#### □ 공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공람기간 : 2016. 09. 12. ~ 2016. 10. 11.(30일)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560-4768)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560-4606)

## 주 민 의 건 제 출 서

① 정비사업 명칭	신현동 회화나무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33-11번지 일원		
③ 의견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④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 하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09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2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32호(2016.02.29.)로 실시계획 고시한 인천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1-27호선, 사업명 : 염곡로(중로1-2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9.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수용토지(면적)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27호선)
  - 명칭 : 염곡로(중로 1-27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구분	노선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점	종 점	최종결정(변경)	비 고
기정	중로 1-27호선	20~25	215	9,530	서구 가정동 120-156	서구 가정동 298-2		
변경	중로 1-27호선	20~25	215	5,868	서구 가정동 120-156	서구 가정동 298-2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9. 30.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06. 30.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3번 참조 (상세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

## 9.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 용 지 조 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계	기정		53필지		86,375.3	9,530.0						
	변경		39필지		80,922.7	5,868.0						
1	기정	서구 가정동	120-39	도	59.0	59	인천광역시					
2	기정	서구 가정동	120-156	도	16,998.0	377	인천광역시					
	변경	서구 가정동	120-156	도	16,998.0	341	인천광역시					
3	기정	서구 가정동	204-86	답	47.0	47	인천광역시서구					
4	기정	서구 가정동	204-88	도	503.0	42	인천광역시					
	변경	서구 가정동	204-88	도	503.0	11	인천광역시					
5	기정	서구 가정동	204-110	답	4.0	4	인천광역시서구					
6	기정	서구 가정동	204-111	도	183.0	183	인천광역시서구					
7	기정	서구 가정동	204-112	답	1.0	1	인천광역시서구					
8	기정	서구 가정동	204-114	도	58.0	58	인천광역시서구					
9	기정	서구 가정동	204-115	도	4.0	4	인천광역시서구					
10	기정	서구 가정동	204-125	답	61.0	37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204-125	답	61.0	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기정	서구 가정동	204-127	답	18.0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204-127	답	18.0	3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2	기정	서구 가정동	204-128	답	211.0	6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204-128	답	211.0	4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3	기정	서구 가정동	204-129	답	173.0	173	인천광역시서구					
	변경	서구 가정동	204-129	답	173.0	30	인천광역시서구					
14	기정	서구 가정동	204-131	답	285.0	284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204-131	답	285.0	14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가정동					외 1인	충의로 19				
15	기정	서구 가정동	204-138	전	73.0	51	인천광역시서구					
	변경	서구 가정동	204-138	전	73.0	18	인천광역시서구					
16	기정	서구 가정동	204-148	답	15.0	15	인천광역시서구					
	변경	서구 가정동	204-148	답	15.0	9	인천광역시서구					
17	기정	서구 가정동	204-153	답	3.0	3	인천광역시서구					
18	기정	서구 가정동	204-154	답	38.0	38	인천광역시서구					
19	기정	서구 가정동	204-156	도	866.0	866	인천광역시서구					
20	기정	서구 가정동	204-157	도	261.0	118	인천광역시서구					
	변경	서구 가정동	204-157	도	261.0	107	인천광역시서구					
21	기정	서구 가정동	204-160	도	549.0	440	인천광역시서구					
	변경	서구 가정동	204-160	도	549.0	428	인천광역시서구					
22	기정	서구 가정동	472-12	대	631.1	5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2-12	대	631.1	18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3	기정	서구 가정동	472-13	대	120.6	1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2-13	대	120.6	8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4	기정	서구 가정동	472-29	대	420.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2-29	대	420.0	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5	기정	서구 가정동	472	대	206.3	2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2	대	206.3	1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6	기정	서구 가정동	476-2	대	202.7	1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2	대	202.7	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7	기정	서구 가정동	476-4	대	376.6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4	대	376.6	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8	기정	서구 가정동	476-5	대	288.6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5	대	288.6	3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9	기정	서구 가정동	476-7	대	326.4	1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476-7	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가정동			326.4	83																
30	기정	서구 가정동	476-8	대	575.1	3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8	대	575.1	1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1	기정	서구 가정동	476-9	대	165.3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9	대	165.3	4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2	기정	서구 가정동	476-18	대	165.4	16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18	대	165.4	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3	기정	서구 가정동	476-23	대	165.4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23	대	165.4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4	기정	서구 가정동	476-34	대	202.6	1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34	대	202.6	5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	기정	서구 가정동	476	주	621.8	3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	서구 가정동	476	주	621.8	7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6	기정	서구 가정동	571	도	39,613.5	759	인천광역시															
	변경	서구 가정동	571	도	39,613.5	260	인천광역시															
37	기정	서구 가정동	572-1	도	34.7	15	인천광역시															
	변경	서구 가정동	572-1	도	34.7	4	인천광역시															
38	기정	서구 가정동	572	도	2,292.6	2,135	인천광역시															
	변경	서구 가정동	572	도	2,292.6	2,109	인천광역시															
39	기정	서구 가정동	574-1	도	14,104.0	31	인천광역시															
	변경	서구 가정동	574-1	도	14,104.0	19	인천광역시															
40	기정	서구 가정동	204-5	도	463.0	44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내무업무부처
	변경	서구 가정동	204-5	도	463.0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1	기정	서구 가정동	204-6	답	1,718.0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내무업무부처
	변경	서구 가정동	204-6	답	1,718.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2	기정	서구 가정동	204-9	답	78.0	78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9	답	78.0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3	기정	서구 가정동	204-15	전	981.0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5	전	981.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4	기정	서구 가정동	204-74	답	696.0	59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74	답	696.0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5	기정	서구 가정동	204-91	답	52.0	52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91	답	52.0	-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6	기정	서구 가정동	204-124	답	146.0	146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24	답	146.0	-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7	기정	서구 가정동	204-126	답	110.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26	답	110.0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8	기정	서구 가정동	204-130	답	56.0	56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30	답	56.0	-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49	기정	서구 가정동	204-139	답	434.0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39	답	434.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50	기정	서구 가정동	204-142	전	227.0	5	인천광역시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42	전	227.0	-	인천광역시					도 내 외 부 본 체 척
51	기정	서구 가정동	204-150	전	95.0	32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204-150	전	95.0	-	인천광역시서구					도 내 외 부 본 체 척
52	기정	서구 가정동	472-11	대	263.5	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변경	서구 가정동	472-11	대	263.5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도 내 외 부 본 체 척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1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346,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032-560-4133, 팩스 032-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13호

##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9. 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등록 사유

○ 가정1동 등 7개동 주민센터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 공인의 최초 사용일 : 2016년 9월 20일 ~ 9월 28일

3. 등록 공인 내역

“별첨 참조”

## ○ 등록공인 내역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1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0일	
가정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0일	
가정1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1일	
가정2동장인/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1일	
가정2동장인/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1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정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2일	
가정3동장인/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2일	
가정3동장인/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2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3일	
석남2동장인/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3일	
석남2동장인/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3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석남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6일	
석남3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6일	
석남3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3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7일	
가좌3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중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7일	
가좌3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7일	

등록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인 영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4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인/ 가좌4동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8일	
가좌4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종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8일	
가좌4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인증기 횡형)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2016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1218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6. 9.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2016. 9. 2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032-560-4094,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조례안 제4조)
-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7조~제15조)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6조~제19조)
-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20조)

## 4. 참고사항

- 가. 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법령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육아·가사휴직자 제외)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후생복지제도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 구내식당 · 매점
2. 소속 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 · 휴양소 · 콘도 등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우수 · 효행 ·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 외 시찰 지원(단, 국외 시찰의 경우 동반 가족 지원 불가)
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4. 본인 및 가족이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5. 정년 ·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6. 공무상 부상 또는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7. 소속 공무원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 외 연수 · 체험(배낭연수) 지원
9.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9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③ 기본복지점수는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은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로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移越)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과면·휴직·과견(휴직 또는 과견은 제3조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① 복지점수를 사용한 사람은 소요된 경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 정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제1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2명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장 기타

- 제2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